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근거 신설 >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018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근거 신설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검토의견	4
다. 관계 기관 등 의견	11

I. 개요

1.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01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강대식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4. 1.
- (3) 회 부 일 : 2026. 4.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등은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이나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을 신청받거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정신질환자·피성년후견인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의3(<u>결격사유</u>) (생략)	제3조의3(<u>결격사유</u>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받거나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개

현행	개정안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①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하거나,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수여를 포함한다)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 제3호 또는 제14호(광고 업무에 한정하여 정지를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인정보의 내용, 대상기관 및 제공 방법 등 개인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①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하거나,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수여를 포함한다)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 제3호 또는 제14호(광고 업무에 한정하여 정지를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
1. ~ 2의3. (생략)	1. ~ 2의3. (현행과 같음)
3. 제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조의3제1항 각 호-----
4. ~ 14. (생략)	4. ~ 1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화장품제조업이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현행법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1)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화장품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2)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등은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이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업종별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³⁾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3) 「화장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화장품제조업”이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11.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말한다.
1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란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영업의 등록) 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이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는 화장품제조업만 해당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화장품제조업자(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참고로, 2026년 4월 법률 제21525호로 공포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의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에서 제외되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화장품법」에 따른 업종별 결격사유 >

구 분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1호) 정신질환자	○	×
(제2호) 피성년후견인	○	○
(제2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6. 10. 7.까지)	○ (‘26. 10. 7.까지)
(제3호) 마약류의 중독자	○	×
(제4호)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
(제4호의2)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제5호)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⁴⁾나 화장품제조업을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4.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의2.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등록하려는 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의사의 진단서⁵⁾ 등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화장품산업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업종별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24년 1월 법률 제20049호로 공포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⁶⁾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 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5)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제조업의 등록 등)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법 제3조의3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3조의3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2.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법 제3조의3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시설의 명세서

6) 「철도안전법」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9세 미만인 사람

2.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민원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강대식위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81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82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02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03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17호) 및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19호) 등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⁷⁾에 따르면 사상·신념, 건강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민감정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화장품제조업 등록의 결격사유인 ‘정신질환자’ 해당 여부에 관한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두 귀의 청력 또는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인 사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대상기관과 개인정보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기관 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치가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인지와 그 공익적 필요성이 사익에 대한 침해보다 우월한지 등에 관한 입법정책적 숙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안 제3조의3제3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이나 대상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 일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핵심적 영역에 해당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이나 대상기관 등은 법률에서 직접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2014년 9월 법제처와 안전행정부(現 행정안전부)는 관계 기관 간 정보 제공에 관하여 “요청기관, 이용목적, 요청정보,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요청정보가 다수일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종류를 각 호로 규정”하는 표준입법모델을 제시한 바 있음.⁸⁾

<자료 제공의 요청 관련 입법례>

「문신사법」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을 포함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문신사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이 제5조 각 호 또는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개인정

8) [참고] 기관 간 정보공유 표준입법모델

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 사실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국가기관의 장,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등 해당 정보를 보유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신사의 면허, 문신업소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셋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 가운데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⁹⁾에 따른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를 활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후견등기부(「후견등기에 관한 법률」),¹⁰⁾ 수형인명표(「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¹¹⁾ 법원이 등록기준지에 통지한 파산선고에 관한 정보(「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¹²⁾ 등은

9)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행정정보”란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10)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견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다음 각 목의 등기(이하 “후견등기”라 한다)에 관한 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가. 성년후견에 관한 등기

1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형인명표) ①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12)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등록기준지 통보) ①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실은 제1호의 사실이 통보된 채무자에 한하여 통보한다.

1.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 다만, 채무자가 법 제556조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하거나 동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에 해당하여 그 효율적 관리·이용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의 대상이 되는바,¹³⁾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각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갖추어져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안 제3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할 실익이 있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작성·배포한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에서는 수형, 파산선고, 후견등기 등의 결격사유 확인이 필요한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민원인의 등록기준지(시·구·읍·면)로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하여 회신을 받되, 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활용한 방법에 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통보한다.

2. 법 제574조제1항제1·2호의 사유가 발생된 때
 3. 복권결정이 확정된 때
 4.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
- ② 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13)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 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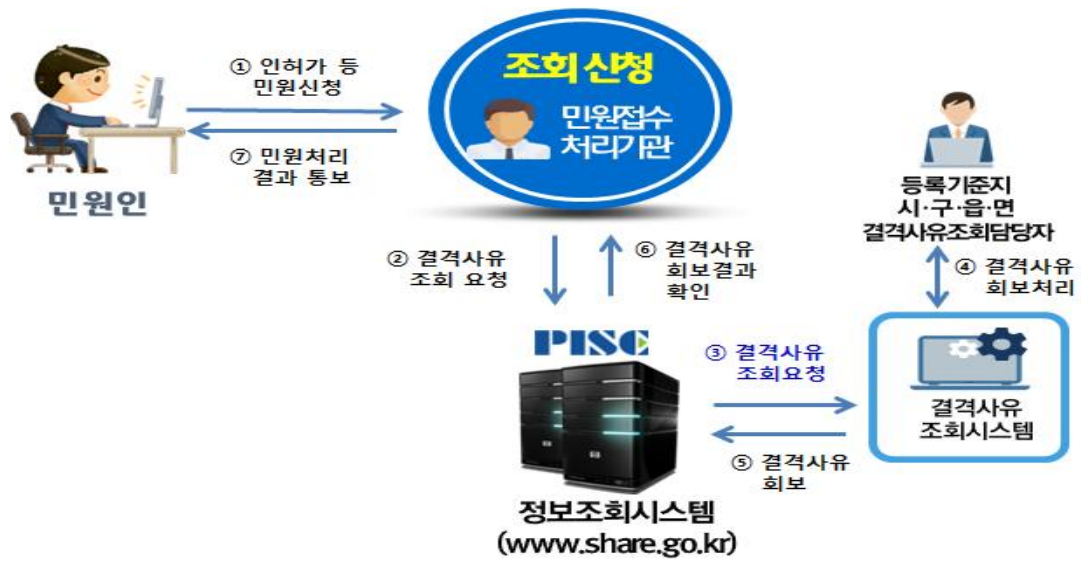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 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한 결격사유 조회 및 회보방법 >



자료: 행정안전부,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

다. 관계 기관 등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영업등록 시 결격사유에 관련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별도 입법 필요성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만일 개정되더라도 하위 법령에 대한 포괄적 위임보다 법률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 개인의 정신질환자 해당 여부나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기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 등이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만일 공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상기 자료는 개인의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 연계 및 공유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형의 집행 등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는 이미 다른 법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규정된 사항¹⁴⁾으로서 개별법에 그 요청의 근거를 두지 아니하더라도 요청에 따라 회신받을 수 있어 입법 필요성이 낮음.

□ (대한화장품협회)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지만, 개정안의 ‘관련 개인정보’라는 표현은 범위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세부 사항을 하위 규정에 위임하고

1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 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있어 정보 수집 범위가 불명확하여 규정의 확대 해석 및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신청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을 유지하거나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항목으로 수집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를 ‘최소 수집의 원칙’¹⁵⁾에 부합하게끔 명확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4

15)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참고】	기관 간 정보공유 표준입법모델
-------------	-------------------------

자료: 법제처, 안전행정부('14년 9월)¹⁶⁾

□ 요청기관, 이용목적, 요청정보,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요청정보가 다수일 경우는 해당 정보의 종류를 각 호로 규정한다.

- 법률에서부터 요청 정보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범위가 한
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야 한다.

□ 과세정보 요청 입안 사례

법률 00조 【자료제공의 요청】

- ① 국토교통부장관(요청기관)은 제00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
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이용목적)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요청정보): 세무관서의 장(대상기관)
 2. AAA: A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에 따라 얻은 정보
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
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시행령 00조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 ① 법 제0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
 2. aaa

※자료: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현황(2024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16) 법제처·안전행정부, 2014년 9월 5일. 보도자료: 법제처·안행부, 표준 입법모델로 협업 속도 낸다! - 기관
간 정보공유 가속화를 위해 표준 법령모델 마련 -